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3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김우영 · 양부남
이언주 · 조계원 · 안호영
박지혜 · 정진욱 · 윤준병
황명선 · 이건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 · 보일러 · 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 · 항공유 · 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

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조건부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(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,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.	제18조(조건부면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4.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